

研究論文

개화기 『만국공법』의 전래와 서구 근대주권국가의 인식 - 1880년대 개화파의 주권 개념의 수용을 중심으로* -

김 현 철**

I. 머리말	IV. 개화기 조선의 근대 주권 개념의 인식과 자주독립의 모색
II. 서구 근대 주권개념의 형성과 근대국제법의 발달	V. 맺음말
III. 개화기 『만국공법』의 전래와 서구 근대주권국가상의 소개	

I. 머리말

근대 한국에서 ‘만국공법(萬國公法)’으로 알려진 국제법과 주권(主權)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체계의 이해와 수용은 서구 근대국제질서체제에 편입되기 위해 요청되는 전제조건 중의 하나였다. 당시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및 일본에서 국제법 일반을 지칭하는 ‘萬國公法’이라는 용어에 접하고 이를 번역한 책자들이 발간되고 배포되는 과정은 이들 국가에서 국제사회의 생소한 법체계, 즉 공통된 가치체계와 법적 확신들, 그리고 조약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형태를 통해 국가간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근대국제질서의 흐름과 근대국가의 양상을 어떻게 파악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¹⁾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05-B00005).

**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조교수, 한국정치사상 전공

1) 법제사의 측면에서 설명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만국공법』은 한국에 최초로 소개된 영미법학서의

기존의 ‘만국공법’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책자로서 번역서적 『만국공법』의 전래시기 및 경로로서, 이는 조선에서 언제부터 서구의 근대 국제질서상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였는가? 둘째, 국제법 일반을 지칭하는 ‘만국공법’에 대한 이해 및 수용의 정도로서, 당시 조선의 개화파 등 지식인들이 새로운 근대국제질서의 본질과 『만국공법』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이해했는가? 그리고 셋째, 조선의 주권보전과 자주독립을 위해 『만국공법』을 활용하여 외교·통상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와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진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는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²⁾ 그러나 동북아에서 만국공법과 주권개념이 서구 정치사상의 수용과 변용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들 개념의 수용과정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도 아직까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³⁾

이시기 『만국공법』과 이로 대변되는 근대국제질서에 대한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반응은 크게 다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만국공법과 이에 기반한 근대 국제질서를 배격하거나, 둘째, 만국공법에 대해 커다란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서구의 국제법을 수용하여 근대국제질서에 편입하는 것을 긍정시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셋째, 만국공법의 실정법적 측면과 국제정치의 현실을 파악하면서도 이 두 가지 모두를 수용하여 조선을 근대국가로 건설하려고 시도한 경우이다. 이러한 입장

하나로 여겨지며, 마틴의 번역은 동양의 근대적 법률용어를 처음으로 기초해 놓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블룬츨리(Bluntschli)의 저서를 번역한 『공법회통』은 한국에 최초로 독일법사상을 수용하는 하나의 경로가 되었다. 최종고, 『全訂新版 韓國法思想史』(서울대출판부, 2001), 242~254 쪽

- 2) 이와 관련, 당시 『만국공법』 등 관련 서적이 조선에 전래되는 과정과 파급효과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서 이광린, 「한국에 있어서의 『萬國公法』의 受容과 그 影響」, 『東亞研究』 제1집 서강대 동아연구소(1982); 김용구, 「서양국제법이론의 조선전래에 관한 소고(1)」, 『태동고전연구』 제0집(1993); 김용구, 「조선에 있어서 만국공법의 수용과 적용」, 『국제문제연구』 No. 23(1999); 김세민 『한국근대사와 만국공법』(경인문화사, 2002); 김홍수, 「개항전 『만국공법』의 수용과 이해」, 공군사관학교 『논문집』, Vol. 49(2002); 유재곤, 「일제의 대한침략논리와 만국공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1995) 등에서 설명되고 있다.
- 3) 근대한국에서의 주권개념 등 서구 정치사상의 수용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로서 문중섭, 『한말의 서양정치사상 수용』(경성대 출판부, 1998); 안용준, 「개화기 서구정치학의 도입에 관한 연구」, 경남대 박사학위논문(1998); 김학준, 『한말의 서양정치학 수용 연구: 유길준·안국선·이승만을 중심으로』(서울대 출판부, 2000); 정용화, 「근대한국의 주권 개념의 수용과 적용」, 서울대 국제문제연구편, 『세계정치, 기획: 주권과 국제관계』 제25집 1호(2004a)를 들 수 있음.

들에서 접근할 경우 만국공법에 대한 태도는 만국공법 부정론, 긍정론 및 활용론 등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⁴⁾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 국가주권 관념이 매우 낮설었던 19세기 한국의 지성계에 주권 개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상사적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한국에서 주권 개념의 수용을 통해 조선의 자주독립을 모색하는 사고는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그리하여 본문에서는 개화기 한국에서 서구 국제법과 주권 개념의 전래 및 수용과정에서 1880년대 개화파의 저작을 중심으로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서구 근대국가의 주요 작동 원리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였으며, 이를 당시 현실에 비추어 이를 어떻게 수용하거나 원용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서구 근대 주권개념의 형성과 근대국제법의 발달

국제관계에 관한 담론에서 주권의 문제는 국가의 평등성과 독립성에 관한 최고의 규범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주권 문제는 원래 절대주의 군주권력의 정당화를 위한 관념으로 출발하였으나, 나중에 일체의 외부적 간섭을 원리상 배격하는 민족주의 관념과 연결되어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논의로 발전하였다. 즉 주권 개념의 역사적 형성의 문제는 근대국가와 근대국제질서의 형성과 관련된 정치투쟁 및 그에 수반된 이론적 논쟁의 문제로 볼 수 있다.⁵⁾

이와 관련, 본 논문에서는 근대국가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정의내린 근대, 근대국가 및 주권의 개념 정의를 원용하고자 한다. ‘근대’라는 시기는 16세기에 처음 시작된 것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으며, 이 시기에 이르러서 근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선구로서 절대국가가 처음 출현하게 되었다. 이후 서유럽의 군주들은 관료제,

4) 개화기 고종을 비롯하여 개화파 및 위정척사파 지식인들의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을 크게 긍정론과 부정론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으로서, 김세민, 앞의 책, 74~124쪽을 참조하기 바람

5) 박상섭, 『근대 주권개념의 발전과정』,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 『세계정치, 기획: 주권과 국제관계』, 제25집 1호(2004), 95~97쪽

조세제도 및 상비군을 갖춘 하나의 중앙집권화된 국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명확히 구분된 영토 위에 통합된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들은 중세 유럽국가들과 구별되는 특징들이었다.⁶⁾

이러한 근대국가 관념은 유럽이라는 특정한 사회에서 발달된 유형관념이며, 이에 대응하는 유형적인 양식과 제도도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전개되었던 특정한 정치양식과 제도로서 대두되었다. 따라서 19세기에 이르러서 유럽정치의 전세계적 팽창과 더불어 정치는 ‘근대국가(近代國家)’를 기본단위로 하는 양상인 ‘國家政治’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유형관념으로서의 근대국가의 발달과정에서 국가의 領土觀念, 主權思想 및 國民觀念이 등장하였다.⁷⁾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중세초기로부터 현재까지의 근대국가 건설과정에서 다음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첫째 그 구성원은 한정된 영토 내에서 근대국가를 공동된 최고의 정부기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둘째 최고의 정부기관은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즉 국가의 결정을 수행해 나갈 공무원과 국가를 보호할 군인들로 이루어진다. 셋째, 이러한 민족국가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영토 내 신민에 대한 행위에 있어 독립적이며, 이러한 인정은 국제적으로 한 국가의 ‘주권(Sovereignty)’을 구성한다. 넷째 대부분의 경우 한 국가의 주민은 공동된 민족의식에 기반 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느낌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다섯째,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은 구성원으로서의 상호 권리와 의무를 배분내지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특징들을 볼 때 서구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은 일반적으로 국가건설(state-building)과 국민형성(nation-building) 과정이 상호결합되어 전개된 것으로 파악되어진다.⁸⁾

위에서 살펴본 근대국가에 대한 개념정의를 통해볼 때, 근대국가는 다음의 여러 요소, 즉 자본주의, 군사주의, 관료주의, 민족주의 및 서유럽 각국의 역사적 경험들이 밀접한 연관 속에서 형성되어 발전해 온 것이다.

6) Anderson, James, “The Modernity of Modern States,” Anderson, James, ed., *The Rise of the Modern State*, London: Wheatsheaf Book Ltd. 1986, p. 2.

7) 李用熙, 『일반국제정치학(상)』(박영사: 1983), 100~101쪽

8) Finer, E. Samuel, “State- and Nation-Building in Europe: The Role of the Military,” Tilly, Charles,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pp. 85~86.

역사적, 사상사적으로 볼 때 ‘주권(sov^{er}eignty)’ 개념은 다음과 같이 다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첫째, 주권은 주로 ‘국권(國權)’이 최고의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주권의 개념은 국내정치적으로 하나의 공동체 안에는 단 하나의 최고의 절대적 정치권위가 존재한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외적 주권이라는 개념은 다른 국가들의 존재를 전제로 형성된 것이며, 또한 국가들 상호간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주권의 이러한 의미는 프랑스 국왕의 국권이 最高의, 獨立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주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던 역사적 상황에 유래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서구에서 주권의 의미는 절대주의 국가형성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신성로마제국, 가톨릭교회로부터 독립의 지위에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국내의 봉건제후에 대해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주권은 국가의 포괄성, 통일적 지배권, 국가의 지배적 의사력 자체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미는 보댕(J. Bodin)이 “주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국가권력이다”라고 서술한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에 따르면 ‘주권’의 구체적 징표로서 입법, 선전포고, 강화, 관리임명, 최고재판, 화폐주조, 도량형 기준결정 및 과세 등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셋째 주권을 국가의 최고 기관에 속하는 권한 내지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및 통일하는 기관의 권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서구에서 이러한 주권론이 대두되는 과정에서 그 역사적 배경으로서 기존의 봉건적 지배형태가 붕괴되고 자본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출현이 예고되었다.

또한 국가의 대외적 주권의 문제는 국가들 간의 평등의 관념을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는 독특한 사회, 즉 세력균형의 원리에 의해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질서가 유지되는 그러한 국제사회의 관념으로 귀결되었다. 서구 중심의 근대국제관계는 주어진 영토 내에서 이러한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 국가들이 상호 무정부 상태 하에서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모두 법적으로 평등하고 각자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⁹⁾

9) 본문에서 미처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서구의 주권(Sovereignty) 개념의 형성과정과 국제관계에서 주권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 『세계정치, 기획: 주권과 국제관계』, 제25 집 1호(2004), 95~118 쪽; Philpott, Daniel, *Revolution in Sovereignty*:

서구의 국제법 발달사를 보면, 19세기 전반은 자연법주의와 실정법주의가 혼재된 시기로, 그리고 19세기 후반은 실정법주의의 전성시기로 설명되고 있다. 이때 ‘실정법 주의(positivism)’는 콩트(Auguste Comte 1798~1857)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던 당시의 정신세계 및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법을 순수한 합법성, 즉 국가의 입법자 의사로 귀착시키는 법적 태도를 가리킨다. 이 시기에 들어와 국가 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중시되었으며, 1814~15년에 개최된 비엔나 회의에서 유럽 열강 등이 그들 간에 적용될 법규범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국제법의 연원은 근대국가의 의사, 즉 조약과 관습뿐이라고 한정짓는 태도가 19세기 서구 국제법학의 주류로 간주되었다.¹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의 독립과 자주성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그 나라의 주권의 보존 여부이다. 주권은 서구 근대국제정치 질서를 움직이는 주요 정치 원리로서, 19세기 초 이후 서구 국제정치체제에서 각국 간의 외교정책과 국제행위를 규율하는 주요 원칙 중의 하나로서 간주되었다. 이와 동시에 각 국가는 ‘독립적’이며, 상호 ‘평등’하다는 관념이 하나의 원칙으로서 확립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주권 평등 원칙은 실제로는 서구 국가에만 한정되어 적용되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등 비서구 국가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 비서구 지역은 서구 국가들이 보기에 주인이 없는 빈 땅이었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선점하면 그 나라의 영토로 인정된다는 사고방식이 서구 국가들 간에 만연되었다.¹¹⁾ 특히 유럽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 윤리관을 반영한 서구 국제법 관념이 동아시아 등 비서구 국가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국제법은 ‘유럽 공법(droit public de l’Europe, European public law)’, 즉 ‘문명국 간의 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 서구 국가들은 비서구 국가들이 서구 중심의 국제사회의 대등한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How Ideas Shaped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p. 3~72를 참조하기 바람

10)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근대국제법의 기원과 서구국제법의 발전과정, 그리고 주권국가의 법적 권한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Brierly, J. L., *The Law of Nation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Law of Peace*,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84, pp. 1~68을 참조하기 바람

11) Gong, Gerrit W.,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1984., pp. vi~6.

서구가 내세운 ‘文明’ 기준들을 충족시켰는가를 그 조건 중의 하나로 내세웠다. 이러한 문명론적 편견 하에서 19세기 서구의 국제법학자들은 세계를 문명화된(civilized), 미개한(barbarous), 그리고 야만(savage)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유럽 이외의 국가들은 쑤문명국, 야만국 등으로 간주되어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며 기껏해야 제한된 의미의 주체로서 간주되었다.¹²⁾

III. 개화기 『만국공법』의 전래와 서구 근대주권국가상의 소개

1. 휘튼의 주권론 소개와 국제법 서적의 번역

19세기 후반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서구 근대국제법 및 주권의 기본 원리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당시 『萬國公法』 등 외국으로부터 전래된 번역서적으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원래 ‘萬國公法’이라는 용어는 19세기 청에서 활동 중인 미국인 선교사 마틴(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1827~1916: 중국명 丁韪良)이 미국의 법학자 휘튼(Henry Wheaton, 1785~1848)이 지은 국제법 서적인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한문으로 번역한 후 이를 1864년에 간행했을 때 청국측이 이 책자에 『萬國公法』이라는 제명을 붙인 것에서 유래되었다.¹³⁾ 1836년 휘튼의 저작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with a Sketch of the History of the Science*는 발간된 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일본,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 번역되었다. 1864년에 간행된 4권 4책의 『萬國公法』은 마틴이 중국학자들과 함께 漢文으로 번역한 것으로 모두 12장 231절로 구성되었다.¹⁴⁾

12) 김용구, 『세계관충들의 국제정치학: 동양 禮와 서양 公法』(나남출판 1997), 45~49쪽

13) 위의 책, 134쪽

14)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萬國公法』(아세아문화사, 1981), 3~6쪽. “해제 개화기의 법학서.” 그리고 중국에서 『만국공법』이 번역된 배경, 경위 및 수용과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Hsü Immanuel C. Y., *China's Entrance into the Family of Nations: The Diplomatic Phase 1858~188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pp. 121~145, “Part II.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Law, 1862~1874”를 참조

『萬國公法』의 원저자 휘튼은 국제법의 요소를 자연법과 국가들의 의사법(volition law), 또는 실정법의 2가지로 파악하는 그로티우스 이래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그로티우스가 자연법을 신의 질서라고 추정되는 국제적 정의를 준수하려는 일반적인 동의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 휘튼은 그것을 유용성 또는 효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제적 도덕성에서 찾고 있다. 즉 그는 문명국이 지켜야 할 도덕성을 국제법의 주요 제재수단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휘튼은 ‘창조적 승인설 개념의 창시자였다 그는 ‘법률적(de jure) 승인’, ‘사실적(de facto) 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국가의 대외적 주권은 그것이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국가가 문명국이나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기존 문명국가들의 권리에 속하였다.¹⁵⁾

19세기 한국에 전래된 『만국공법』의 원저자인 휘튼이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서 국제법의 일반 사항 및 주권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네이션(Nations)과 국가들(States)이 국제법의 고유한 주체에 해당된다. 그리고 주권(Sovereignty)은 특정 국가 내에서 행사되어지는 최고 권력(supreme power)으로서, 대내적 및 대외적 주권으로 구분되어진다. 대내적 주권(Internal sovereignty)은 헌법 등 공동체의 근본 법률에 의해, 한 국가의 인민에 내재하거나 그 지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며, 대내적 공법(internal public law)에 의해 규제되어진다. 그리고 대외적 주권(External sovereignty)은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 내지 기타 정치체와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독립에 관련되며, 대외적 공법(external public law) 또는 국제법(international law)으로 명명되는 법규에 의해 규제되어진다.

하나의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의해 ‘국가로서의 승인’을 받거나 일반 국제사회(general society of nations)에의 편입여부는 다른 국가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그 과정에서 한 국가의 대내적 주권(Internal sovereignty) 그 자체는 다른 국가에 의한 승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반면, 한 국가의 대외적 주권(External sovereignty)이 완전해지고 완결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한다.¹⁶⁾

15) 김용구, 앞의 책(1997), 20-68 쪽

16) Wheaton, Henry,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The Literal Reproduction of the Edition of 1866 by Richard Henry Dana, Jr., Edited, with Notes By George Grafton Wilson,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36(이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로 약칭함), pp. 25-28. 제1권(Part First) “국제법의 정의, 연원 및 주체(Definitions, Sources, and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주권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향유하는 권리들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본원적(primitive)이거나 절대적 권리들(absolute rights)이며, 다른 하나는 조건적(conditional)이거나 가설적인 권리들(hypothetical rights)이다. 휘튼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주권적 권리들(sovcreign rights) 을 가지게 된다 이는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격이 부여됨을 의미하여, 국가의 절대적이며 국제적 권리(absolute international rights of States) 로 간주된다 이러한 국가의 절대적이며 국제적 권리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것은 자기보존의 권리(the right of self-preservation) 이다 다만 이러한 주권행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을 유지하기 위한 개입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권국가, 또는 이미 강대한 국가가 자국이 점령한 지역을 자신의 영토에 편입하거나, 결혼, 상속 또는 다른 국가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서 그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되었다.¹⁷⁾

이러한 서구의 주권개념을 소개한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를 번역한 『萬國公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권은 2개장 37개절로 구성된 “釋公法之義明其基本源題其大旨(Definitions, Sources, and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으로서, ‘국제법의 정의와 주체’에 해당된다. 이 중 제1장 ‘釋義明源’에서는 근대 국제법의 형성과정을, 제2장 ‘論邦國自治自主之權’(원문은 Nations and Sovereign States)에서는 근대국제법의 주체인 주권국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2 권은 4 개장 58개절로 구성된 “論諸國自然之權(Absolute International Rights of States)” 으로서, ‘국가의 기본권’에 해당된다. 제3 권은 2개장 43개절로 구성된 “論諸國平和往來之權(International Rights of States in their Pacific Relations)” 으로서 ‘국가의 평시 외교권’에 해당된다. 그리고 제4 권은 4개장 101개절로 구성된 “論文戰條規(International Rights of States in their Hostile Relations)” 로서 ‘전시국제법’에 해당된다.¹⁸⁾

『萬國公法』이외에도 당시 마틴에 의해 서구의 국제법 서적들이 다음과 같이 번

제2장 “Nations and Sovereign States” 중 제16~21 절

- 17)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pp. 75~77, 제2권 “국가의 절대적이며 국제적 권리”(Absolute International Rights of States) 제1장 “자기보존 및 독립의 권리”(Rights of Self-Preservation and Independence), 제60~63 절
- 18) 번역서적 『萬國公法』의 목차와 내용분류에 대한 설명은 김홍수, 앞의 논문, 169~180 쪽을 참조하기 바람.

역되어 출간되었다. 국가 간의 관례에 의하여 실정 국제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보았던 마르텐스(Charles de Martens, 1790~1863)가 1832년 발간한 *Guide diplomatique*는 외교의 일상적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성초지장(星輶指掌)』으로 한역되었다. 그리고 국제법 규칙은 기독교 국가들의 야만국 또는 半문명국들에 대한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울지(Theodore Dwight Woolsey, 1801~1889)의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가 1860년 출간되었으며 1877년 『공법편람(公法便覽)』으로 한역되었다. 또한 스위스의 법학자인 블룬츨리(Johann Caspar Bluntschli, 1808~1881)는 국제법의 적용 지역이 유럽에서 벗어나서 전세계로 확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868년에 출간된 그의 『現代國際法 *Das moderne Vo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aten als Rechtsbuch dargestellt*』이 마틴에 의해 1880년 『공법회통(公法會通)』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 청국에서 번역된 『萬國公法』 등 일련의 국제법 서적들이 조선에 전래되어, 국제법의 대명사, 또는 서구 국제질서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이러한 서적을 읽으면서 서구 국제법 관념과 서구 근대 주권국가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2. 『만국공법』 번역본의 전래와 한국내 수용

한국(조선)에서 『만국공법』의 전래와 초기의 수용과정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9) 조선에서 외국서적의 도입이 엄금되었으나, 『萬國公法』 책자가 1864년 간행된 이후 청에 파견된 사절들 중 해외 동향에 관심이 높았던 박규수, 오경석 등에 의해 비밀리에 조선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0) 당시 서구의 국제

19) 일본에서는 휘튼의 『萬國公法』이 막부의 개성소에서 1865년에 번각본으로 출판되었다. 이를 일본어로 번역을 시도하여 1868년 쓰쓰미 고시지(堤毅士志)가 번역한 『萬國公法譯義』와 1870년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綱)가 번역한 『和譯萬國公法』이 출간되었다. 加藤弘之는 『國法汎論』(Bluntschli, *Allgemeines Staatsrecht*의 부분 번역, 1872~74년)과 『國體新論』(1874년)을 저술하였으며 西周는 『萬國公法』(Simon Vissering의 강의를 필기한 것을 번역함, 1868년)을 번역하였다. 일본에서 『萬國公法』의 전래와 번역 및 수용에 관한 개괄적 설명은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저, 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도서출판 이산, 2001), 113~140쪽, 유재근 앞의 논문 64~131쪽을 참조하기 바람.

20) 이광린, 앞의 논문, 123~124쪽.

법 일반을 지칭하는 ‘萬國公法’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조선에 전래되었음을 보여주는 문헌상의 기록으로서 1876년 음 1월 20일 양 2월 14일 자 『고종실록』에 실린 신헌(申櫛)의 보고서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과의 수호조약체결 시기인 1월 18일(양 2월 12일) 조선측 대표 신헌과 일본측 대표 구로다 기요다카(黒田清隆)와의 회담시 ‘만국공법’이 언급되었다.²¹⁾

조선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파악노력의 일환으로서 만국공법을 이해하는 첫 사례로서, 일본과의 강화도수호조약이후 제1차 修信使로서 1876년 5월 일본을 방문한 김기수(金綺秀)는 『日東記游』에서 만국공법에 관하여 언급하였다.²²⁾ 김기수는 “소위 萬國公法이란 것은 여러 나라가 동맹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마치 六國間 連衡의 법칙과 같다”고 하여 만국공법을 전통적인 합종연횡의 연장선상에서 일종의 세력균형 정책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²³⁾ 또한 1870년대 후반부터 외국의 문물과 국제관계의 변화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김옥균(金玉均), 박영효(朴泳孝) 등 甲申政變 주도 개화파는 1879년 이동인(李東仁)에게 일본에 건너가서 서구 국제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을 요청하였다.²⁴⁾

그 후 1882년 음력 8월 5일 고종이 교서의 형태를 통해서 서양문물의 수용을 통해 부국강병을 추구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교서에서는 당시 세계 각국이 군사력으로 대치하는 상황을 마치 춘추전국시대의 분열 내지 대결양상에 비유하면서, 세계 각국이 조약을 체결하고 통상을 하는 것이 만국공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²⁵⁾ 그리고 1882년 8월 24일 지석영(池錫永)의 상소와 같은 해 10월 7일 변옥(卞燾)의 상소문에서 조선이 대외관계와 조약체결에 관련된 외교실무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만국공법』 등 관련서적을 널리 보급하여 숙지하는 방

21) 김용구, 앞의 책(1997), 182쪽. 그리고 번역책자로서 『만국공법』의 전래가 문헌상 처음 보이는 것으로서, 『日使問答』과 『倭使日記』의 1877년 12월 17일조에 의하면 1877년 12월 17일 花房義實 이 당시 禮曹判書 趙寧夏에게 『萬國公法』과 『星輶指掌』을 기증하였다. 김용구, 앞의 논문(1999), 3~4 쪽

22) 김수암, 「1880년대 만국공법의 전파와 수용」,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년도 연례학술회의 외교사분과 발표논문집』(2002), 3쪽.

23) 『修信使記錄』, 『日東記游』, 卷三, 政法, 70 쪽

24) 김현철, 「개화기 국제질서의 변동과 만국공법(국제법)의 수용」,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년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집』(2004), 11 쪽

25) 『高宗實錄』 고종 19년 8월 5일조

안이 거론되었다.²⁶⁾ 이와 같이 1880년대 초 동도서기론적 상소문을 중심으로 富國強兵을 추구하기 위해 『만국공법』으로 상징화되는 서구 국제법 관련 서적을 포함하여 서구의 문물과 기술 및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1880년대 초 개화파들은 위에서 언급한 『만국공법』등 청·일에서 전래된 번역서적들을 읽으면서 만국공법으로 일컬어지는 당시 서구 국제법 및 주권 개념 등 근대 국제정치질서를 작동시키는 정치적 원리와 그 작동과정을 이해하고자 시도했다.

또한, 19세기 서구의 근대적 국제법, 국제관계 및 대외실무에 관한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조선의 외교담당 부서에서도 『만국공법』을 참조하였다. 조선이 직면한 대외적인 현안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상, 관세, 조약, 사절제도 및 전권 위임 등의 제도를 매개로 만국공법을 국가간 실무에 활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1880년 후반에는 조선에서 대외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실무지침서로서 『만국공법』이 참조되거나 인용되었다.²⁷⁾ 이점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 편찬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1887년, 1책 8장)의 관련 규정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아문의 업무는 외국과의 條約書와 通商章程·외국인과의 교섭사례를 간행하고, 조약이나 장정을 개정할 때에 萬國公法, 즉 당시 국제법의 구체적 사례와 규정들을 조사하여 참조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였다.

IV. 개화기 조선의 근대 주권 개념의 인식과 자주독립의 모색

1. 개화파의 『만국공법』 수용과 서구 근대 주권 개념의 이해

이 시기 ‘만국공법’으로 대표되는 국제법 관련 지식 중에서 당시의 조선의 개화파에게 특히 호소력을 가진 부분은, 국제법상 자주국가가 향유하는 권리에 관한 부분이었다. 당시 주권개념을 언급하거나 수용한 대표적 사례로서, 박영효의 「1888년 상소문」과 유길준(兪吉濬)의 『西遊見聞』을 들 수 있다.

26) 『高宗實錄』 고종 19년 8월 23일조와 고종 19년 10월 7일조

27) 김수암, 앞의 논문(2002), 2~5 쪽

박영효의 경우, 독립국가의 주요권리로서 ‘주권’을 언급하면서, 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1888년 상소문」에서는 “외국과 교류할 때 우리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거나 국체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게 하는 것”을 조선이 취해야 할 외교정책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서 제시하였다.²⁸⁾ 유길준은 『西遊見聞』의 제3편, “邦國의 權利”에서 한 나라의 주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주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국제적 측면과 국내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나라의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첫째는 국내적인 주권(內用하는 主權)으로, 나라안의 일체의 정치와 법령이 그 정부가 세운 헌법을 스스로 지키게 함을 말한다. 둘째는 외국에 대한 주권(外行하는 主權)으로, 독립과 평등의 원리를 따라 외국과 교섭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²⁹⁾

이와 같이 유길준이 주권을 대·내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은 『萬國公法』 제1권 제2장 제6절의 ‘在內之主權’, ‘在外之主權’으로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되어진다.³⁰⁾ 또한 유길준은 서구의 주권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동시기 데니(O. N. Denny)가 다음과 같이 조선의 자주독립을 주장한 점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데니의 『淸韓論』(China and Korea)에서도 조선이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가지는 몇 가지의 권한과 그 책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휘튼의 저서 *Elements of International*

28) 「朝鮮國內政ニ關スル朴孝建白書」, 日本 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 第21 卷 明治 21 年 1 月-12 月間, 문서번호 106. 309 쪽

29) 兪吉濬全書編纂委員會, 『兪吉濬全書』(일조각, 1971)(이하 『兪吉濬全書 1』으로 약칭함), 85쪽. 위 본문 인용은 유길준 저·김태준 역, 『西遊見聞(前)』(박영사, 1979), 95 쪽 참조.

30) 김세민, 앞의 책, 97쪽. 한편, 유길준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1878년에 간행한 『通俗國權論』의 제7 장 “外戰止むを得ざる事”에서 당시 국제관계를 약육강식의 세계로 인식하고, 국가 간의 화친조약이나 만국공법은 외면적인 의식이나 명목에 불과하고, 국제관계의 실체는 권위를 다투고 이익을 탐하는 것이 세계고금의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백 권의 만국공법이 여러 대의 대표보다 못하고, 여러 책 분량의 화친조약도 하나의 광주리에 담긴 탄약에도 미치지 못하여, 대표 탄약이 있으면 주장하는 바를 도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문중섭, 앞의 책, 78쪽. 동시기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와 조선의 유길준 등 개화파의 만국공법관과 근대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곤, 앞의 논문, 116~131쪽, 문중섭, 앞의 책, 61~119쪽을 참조하기 바람

Law에서 주권을 대내적 주권과 대외적 주권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을 원용하고 있다. 데니의 설명에 따르면, 대외적 문제는 물론이고 대내적 문제를 외세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항상 처리해온 민족은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주권국가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주권국가나 독립국가의 여부를 가름하는 시금석은 한 나라가 다른 주권국가나 독립국과 협상하고, 우호, 항해,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교환하고, 전쟁과 평화를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³¹⁾

유길준이 보기에 한 나라의 주권은 그 나라가 가진 형세의 강약, 토지의 대소, 국민의 다과를 막론하고 단지 국내의 관계의 진정한 형상을 따라 정해지는 것이었다.³²⁾ 이어 유길준은 국가의 기본 권리로서 다음 권리들을 열거하였다. 첫째, 현상 보존(現存)과 자위(自衛)하는 권리이며, 이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권리 중에는 선전 포고하거나 강화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독립하는 권리이며, 여기에는 평등과 균형을 유지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셋째, 산업(토지)에 관한 권리. 넷째, 입법(立法)하는 권리. 다섯째, 외교와 사신의 파견 및 통상에 관한 권리. 여섯째, 강화와 조약을 체결하는 권리. 그리고 일곱째, 중립하는 권리가 이 거론되었다.³³⁾

이러한 국가의 체권리에 대한 설명은 유길준이 『만국공법』의 다음 부분을 참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원래 휘튼은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서 주권국가가 가지는 절대적이며 국제적인 권리로서 ‘자기보존의 권리’(the right of self-preservation)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권리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로 간주되었다. 또한 ‘자기방어의 권리(the right of self-defence)’도 언급되었다. 이러한 방어의 수단은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독립국가도 다른 외국 세력에 의해 규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모든 독립 국가들은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자국의 국가적 영토, 부, 인구 및 국력을 증대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휘튼의 원저에서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타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경우에 다른 국가의

31) Denny, O. N., *China and Korea*, Shanghai: Kelly and Walsh, Ltd., 1888, pp. 3-5. 신복룡·최영근 역, 『데니문서』(평민사, 1987), 18~19 쪽

32) 『兪吉濬全書』 1, 85 쪽

33) 『兪吉濬全書』 1, 86~88 쪽. 김태준 역, 『西遊見聞(前)』, 96~98 쪽

실질적인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³⁴⁾

그리고 『萬國公法』의 제2권 제1장 ‘論其自護自主之權’에서는 자기보존과 독립의 권리들(Rights of Self-Preservation and Independence)을, 제2장 ‘論制定法律之權’(Rights of Civil and Criminal Legislations) 부분에서는 국제사법으로서, 외국인의 지위와 보호, 국적, 외교특권, 외국군대와 군함의 지위 그리고 치외법권 등을 설명하고 있다. 『萬國公法』의 제3권 제1장 ‘論通史’에서는 외교특권으로서, 불가침권, 치외법권, 수행원과 가족의 특권, 영사의 특권 등을, 제2장 ‘論商議立約之權’은 조약의 수정과 비준 및 조약의 영속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주국은 자주권의 침해를 받았을 때 상의해서 조약을 수정할 수 있다. 반면 속국(Dependent States) 과 반주권국은 주권국에 의해서 조약체결권이 제한받는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萬國公法』의 제4권의 제1장 ‘論戰始’에서는 전쟁 개시의 의의·절차·효력을, 제2장 ‘論敵國交戰之權’에서는 교전시 국제법에 대해, 제3장 ‘論戰時局外之權’은 전시의 국외중립에 대해, 제4장 ‘論和約章程’은 강화조약의 정의, 절차 및 효력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³⁵⁾ 이러한 휘튼의 설명과 『만국공법』의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으로서, 유길준은 당시 공법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주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고금의 여러 공법 대가들의 말에 따르면, 어떤 나라나 국민이든지 간에 그 국헌의 체제와 규례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 나라를 자주적으로 다스릴 때 이는 주권 독립국이라 하며, 주권은 한 나라를 관제하는 최대의 권리라 한다.. 국내외에 행사하며 안으로 베푸는 주권은, 그 나라의 헌법과 그 정신에 따라 국민들에게 붙어 다니며 또한 통치자에게 위임된다. 밖으로 베풀어지는 주권은 그 나라 정치의 독립됨이 각각의 정치를 상대하며, 강화하거나 전쟁하거나 간에 그 교섭하는 관계를 간직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국내의 주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고, 외국인의 지휘를 받지 않는 나라는 진정한 독립국인 것이다. 이런 나라는 주권국의 대열에 끼는 것이며, 그 독립 주권의 명확한 증거는 다

34)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pp. 75-77, 제2권 “국가의 절대적 국제적 권리”(Absolute International Rights of States) 제1장 “자기보존 및 독립의 권리”(Rights of Self-Preservation and Independence), 제60-63 절

35) 김홍수, 앞의 논문, 171~180쪽.

른 주권 독립국과 동등한 수교 통상조약을 맺고 사신을 교환하여 맞아들이며, 화친과 선전 포고를 자주적으로 행사함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주권에 따라 다니는 가장 적절한 권리인 것이다. 한 나라가 이것을 얻어 지킬 때 독립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맺은 조약 관계에 따라 반독립국 또는 속국의 대열에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³⁶⁾

그리고 유길준은 『국권(國權)』(1888~9년 추정)에서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권 개념을 수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면 만국공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고 보았다. 그는 이 글에서 “주권이란 한 나라를 관제하는 최대의 권리이며 “국내외적인 여러 관계를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외국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나라는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라고 하였다³⁷⁾ 또한 유길준은 『서유견문』의 제3편 “邦國의 權利”에서 근세 공법학자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약소국이 그 독립을 보전하는 것은 강대국의 의사를 받들고, 잠식해 올지도 모르는 강대국의 침범을 두려워하는 것으로써 유지된다. (중략) 강대국은 언제나 존중받고 약소국은 언제나 비굴하게 되지만, 그래도 약소국이 하나의 독립주권국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략) 약소국이 비록 독립을 보전하고 방위하기에 불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나 관습상으로도 강대국에 부속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³⁸⁾

이어서 유길준은 강대국이 자기의 세력을 남용하여 약소국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의한 폭행이며 무도한 악습이라고 하여, 만국공법에서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만국공법은 각 나라들의 형세를 지켜 주며 약소국의 권리를 보호하며, 주권을 하나같이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보았다. 마치 국법이 한 나라 안에서 시행되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면, 만국공법은 세계에 미쳐 각국에 주어진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따

36) 『兪吉濬全書 1』, 89~90쪽. 위 본문 인용은 김태준 역, 『西遊見聞(前)』, 99~100쪽 참조.

37) 유길준의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과 국권론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정용화,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 한국』(문학과 지성사, 2004b), 153~234쪽을 참조.

38) 『兪吉濬全書 1』, 90~91쪽. 위 본문 인용은 김태준 역, 『西遊見聞(前)』, 100~101쪽 참조.

라서 약소국으로서 불행한 사정으로 강대국에 공물을 바쳐야 하는 관계가 일단 생기게 되면, 양국 간의 교섭하는 예법과 규례를 정하여 강대국은 공물을 받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렇지만 약소국은 공법의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초를 확립하여 타국의 개입이나 간섭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³⁹⁾

2. 개화기 조선의 자주·독립의 모색과 근대주권국가 개념의 원용

개화기 조선이 처한 국제관계 하에서 주권(主權) 개념을 수용하여 근대적인 주권국가의 수립을 지향할 경우, 이는 기존의 전통적 사대질서를 부정하고 서구 근대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880년대 이후 조선이 미국 등 서구 국가와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중국에 대한 전통적 종속관계를 주권평등의 근대 국제법관계로 어떻게 전환시키느냐가 주요 과제가 되었다.

19세기 후반 당시 조선이 처한 국제적 환경 하에서 서구근대국제질서 규범과 전통적 동아시아국제질서 규범이 동시에 공존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에 간섭하려는 주변국가와의 갈등과 긴장이 유발되었으며, 사실상 조선의 내정과 외교상의 자주독립성이 크게 제약되었다. 당시 개화기에 통용된 자주와 독립이라는 용어들의 사용이 시사하는 바를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주(自主, autonomy)’는 사대질서 하에서 통용된 용어로서, ‘외번(外蕃)’인 조선이 중국에 대하여 그 내정과 외국 교제는 자주에 임한다라는 의미로 파악되었다. 실제적으로 ‘자주’는 전통적인 사대질서의 연장선상에서 조선에 대한 중국(청)의 간섭으로부터 내정과 외교상의 자율성을 보존하려는 목적 하에 주로 원용되었다. 그리고 ‘독립(獨立, independence)’은 근대 국제법 질서 하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 하나의 근대 주권국가의 속성과 연관지어 수평적인 국제사회 구성원의 특징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선의 경우 1880년대 이후 서구 근대국제질서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독립’은 청 일 등에 대하여 국가적 주권을 보전하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⁴⁰⁾ 특히 1880년대 이후 청이 조선에 대한 명목상의 종주권을 내세워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실질적으로 크게 간섭함으로써, 사실상 조선의 주권을 크게 침해하

39) 『兪吉濬全書 1』, 91~94쪽.

40) 김용구, 『외교사란 무엇인가』(도서출판 원, 2002), 123쪽.

였다.

청은 자국이 서구 각국과 조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자국이 하나의 독립국가임을 주장한 반면, 1880년대 초 조선이 서구 각국과 조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조약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리홍장(李鴻章)이 ‘조선은 청국의 속국’이라는 항목을 삽입하려고 하자, 김윤식은 이를 ‘양편(兩便)’ 또는 ‘양득(兩得)’이라는 논리로 수용하였다. 당시 김윤식으로서 조선이 중국의 속방임을 인정하더라도 외교와 내정의 자주권까지 빼앗기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각국이 조선을 앞잡아보지 못하는 실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⁴¹⁾

조선이 1882년 영국, 미국, 독일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새로 편입된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독립국가로 조선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외교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조미조약과 조영조약의 체결 직후 고종이 미국 대통령과 영국 여왕에게 보낸 서신에서 조선이 비록 중국의 속방이지만, 이것은 명분상에 그치는 것이며 내정과 외교에 있어 자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로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가라는 점을 명시하였다.⁴²⁾

임오군란 이후 개화파는 청의 조선 속국화 정책이 전통적인 국제질서 관념에서 보더라도 종주국의 신의와 도리를 청이 먼저 저버린 것이며, 근대적인 국제질서 관념에서도 타국의 독립과 주권을 침해한 침략행위로 파악하였다. 이에 박영효 등 개화파는 1882년 수신사로서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영국 외교관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조선은 하나의 독립국가(an independent nation)임을 설명하였다. 개화파는 청국이 당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를 부정하였으며, 청국에 대한 조선의 조공관계는 특정한 의례상의 관례에 한정됨을 주지시켰다. 김옥균의 경우 1883년 10

41) 『陰晴史』上, 고종 18년 12월 26일자, 국사편찬위원회 편, 『陰晴史·從政年表 全』(탐구당, 1971), 52~53쪽

42) 당시 고종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중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Although it is the case that Korea has been so far a vassal of China, the entire conduct of her internal affairs, and of her foreign relations, remains in her own hands as an independent Sovereign State.”, Kenneth Bourne and D. Cameron Watt,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Vol. 2, Korea, the Ryukyu Islands, and North-East Asia, 1875-1888*, Frederick,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89~1994 (이하 B DFA, I-E-2로 약칭함), p. 12.

월 13일(양) 파크스(Harry S. Parkes) 주일 영국공사와의 회담에서 최근의 조선에 있어서 청국의 행동이 국제법에 합치되지 않다고 생각하며, 국제법은 강국에 의하여 압박받고 있는 약소국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박영효는 1882년 양력 12월 23일 자 대답에서 박영효는 파크스 주일 영국공사에게 조선이 서양과 조약을 체결하는 초안에 조선이 중국의 속국임을 선언하는 조항이 삽입되었지만, 전적으로 조선이 외교와 내정에 있어서 독립적임을 주지시켰다.⁴³⁾

당시 개화파는 조선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세계 각국과 평등한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교제할 것을 절실히 희망하였으며, 전통 사대질서에서 벗어나 근대국제 질서 하의 자주독립국가로의 전환을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1884년 갑신정변 당시 혁신정장에서 ‘대원군(大院君)의 조속한 환국과 조공·허례 의식의 폐지가 공포됨으로써, 청의 종주권 행사를 부정하였다⁴⁴⁾ 즉 위의 사항은 청에 대한 종속관계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시 개화파는 조선을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표명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파견된 원세개는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직접 간섭하여 사실상 식민지의 총독 행세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국제법에 의하여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당시 개화파의 시급한 과제였다.

당시 조선이 청의 간섭과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과시하는 구체적 외교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서구의 근대주권국가 개념을 적극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양절체제론’ 비판, ‘중립화 구상’ 및 ‘상주외교사절 파견’ 등의 노력들이 전개되었다.⁴⁵⁾ 특히 미국 등 조약을 체결한 서구국가에 대한 상주사절의 파견 결정은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독립 국가로서 주권 행사

43) *B DFA*, I-E-2, 1882년 12월 19일자 E. Hertslet, “Summary, Korean View of the Question,” pp. 19~20, 107. 1882년 6월 6일 조선은 영국과의 조약 체결시 영국 여왕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 “조선은 단지 중국의 하나의 屬國(a dependency of China)이지만, 조선의 내적 행정과 외적 교제는 모든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왕으로서 조선왕의 관할과 통제하에 있다”이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As regards Chosen, it is simply a dependency of China, but its internal administration and its external intercourse are entirely, and in all respects, within his discretion and control as an independent King.” *B DFA*, I-E-2, p. 19.

44)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金玉均全集』(아세아문화사, 1979), 95쪽.

45) 김수암, 앞의 논문, 13~14쪽.

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당시 청과 조선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수공국(受貢國)과 증공국(贈貢國)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양절체제(兩截體制)”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⁴⁶⁾ 유길준이 이러한 “양절(兩截)”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배경에는, 1880년대 이후 서구 각국과의 수교이후에도 종래의 화이적 명분질서 하에서 청에 대한 종속관계가 근대국제법에 의해 새롭게 각색되면서 오히려 강화되어간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길준은 근대국제법에서 ‘증공국’(贈貢國)과 ‘속국’(屬國)을 구분하는 원리를 원용하여 조선이 청에 증공국이 될지언정 속국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주독립국가로서 조선의 국제적 위상을 설명하였다. 유길준의 설명에 의하면, 속국은 조약을 체결하는 권리가 없지만, 증공국은 다른 독립주권국과 동등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조약상대국에 사절을 파병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대국이나 소국이나 다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현실국제관계에서 국가 간의 대소와 형세의 차이로 스스로를 보전하기 위하여 타국의 보호를 받는 ‘수호국’(受護國)과 공물을 바쳐 강대국의 침탈을 면하는 ‘증공국’이 생겨났다. 설사 수호국 또는 증공국이라 하더라도 제3의 타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 하나의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임이 당시 국제법에 의해 보장받는 것으로 설명되어졌다.⁴⁷⁾ 유길준이 증공국도 하나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부분은 앞 절에서 언급한 휘튼 원저의 다음 부분을 소개 번역한 『만국공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서는 하나의 주권국가(a Sovereign State)는 그 내적 구성의 형태가 어떠한 것이라도, 외국 세력으로부터 독립되어 다스려지는 특정한 nation 또는 people에 의해 정의되었다. 또한 모든 주권국가들은 그들의 상대적 국력에 차이가 나더라도 국제법의 관점에서는 평등(equal)하다고 간주되었다. 그리고 한 국가의 주권은 설사 그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잠시 복종하더라도 외국의 지배에 의해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국력이 약한 국가의 주권이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법률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이러한 지배 또는 영향력이 명백

46) 『俞吉濬全書 1』 117쪽.

47) 『俞吉濬全書 1』, 89-99쪽. ‘양절’론에 대한 유길준의 설명은 정용화, 「유길준의 ‘양절’ 체제론: 이 중적 국제질서에서의 『방국의 권리』, 『국제정치논총』, 37집 3호(1998)를 참조

한 계약(compact)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완전한 대외적 주권에 필수불가결한, 특정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에 의존적인 국가들은 ‘반주권국(semi-sovereign States)’으로 불리워진다.⁴⁸⁾

이러한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서 『萬國公法』 제1권 “釋公法之義明其基本源題其大旨(Definitions, Sources, and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의 제 12~13 절은 自主國과 半主國을 논하고 있으며, 제14 절에서는 進貢國(Tributary States) 과 藩邦(States having a feudal relation to each other)의 자주권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그들의 자주권이 조공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에서 자주권이 인정된다는 원칙을 표명하였다.⁴⁹⁾

또한 데니의 『淸韓論』에서도 당시 저명한 국제법 학자인 블른출리나 오스틴(John Austin)의 설명을 원용하여, 청에 대한 조공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다른 나라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데니의 설명에 의하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맺고 있는 조공관계는 주권이나 독립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되었다.⁵⁰⁾

한편, 1885년 영국의 거문도 점령사건을 겪으면서 유길준 등 일부 개화파는 조선을 중립화시키는 것만이 조선의 자주독립을 지키고 러시아를 막는 방책이며, 중국이 그 주창자가 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보았다. 유길준은 만약 조선이 중립국이 될 경우 국제법상 독립국으로 승인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았다. 또한 김옥균은 1886년 「여이홍장서(與李鴻章書)」에서 중국과 조선을 “입술과 이의 관계(脣齒之勢)”로 전제하고 청국을 맹주로 하는 조선의 중립국화를 제시하였다.⁵¹⁾ 개화파의 이러한 중립화 구상은 청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조선의 중립화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조선의 자주독립과 주권보전을 점진적으로 추구한 것이었다. 또한 갑신정변 주도 개화파의 한 사람인 박영효는 독립국가의 자주외교의 영역인 상주 외교사절의 파견을 염두에 두면서, 고종(高宗)이 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등에 상주 외교사절을 파견하였던 점을 높이 평

48)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의 제1권 제2장 “Nations and Sovereign States” 중 제33~34 절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pp. 44~45.

49) 김홍수, 앞의 논문, 169~170쪽.

50) Denny, O. N., op. cit., pp. 3~5. 신복룡·최영근 역, 앞의 책, 20~33쪽.

51)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金玉均全集』, 152 쪽

가하였다.⁵²⁾

이러한 상주외교사절 파견의 일환으로서, 초대 주미공사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 사례의 하나로서, 박정양 초대주미공사가 의전절차에 관한 중국의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발생한 ‘영약삼단(另約三端)사건’에 대해 유길준이 이를 변호하는 외교문서(答淸使照會)를 작성한 점을 들 수 있다. 당시 유길준이 작성한 답서에 의하면, 조·청간 관계에 의해 청국이 주장한 ‘삼단’보다 ‘만국공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의 상주사절이 자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⁵³⁾

V.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19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전환기에 조선에 전래된 『만국공법』 서적들은 개화와 등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주요 지식체계로서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유길준 등 초기의 개화파에게 『만국공법』을 통해 소개된 근대 국제법 지식들은 주변 열강의 간섭과 침략으로부터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전하는데 유용한 하나의 도구로서 수용되었다.

19세기 후반 서구 국제법의 기본 흐름이 실정법을 중시하고 서구국가 중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가운데,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는 마틴에 의하여 『만국공법』으로 번역되었다. 『만국공법』 등 일련의 국제법 서적들이 하나의 유행처럼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 전래되어서, 1870년대 후반 이후 개화파들에게 서구의 근대 국제법과 근대국가의 주요 양상을 파악하는 일종의 교과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이 서구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외교제도, 절차 및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만국공법 등 서구의 근대 국제법 지식 및 외교제도를 적극 도입하지는 논의가 확산되

52) 「朝鮮國內政ニ關スル朴泳孝建白書」, 『日本外交文書』 21卷 293쪽

53) 주미공사의 파견을 전후한 시기의 조청관계의 전개과정과 만국공법을 활용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주장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김수암, 앞의 논문, 14~20쪽 참조

었다.

초기에 유길준 등 조선의 개화파들은 ‘만국공법’을 활용하면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조선의 자주독립과 안전을 보존하고 주변 열강의 진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서유견문』에서 소개된 서구의 국제법 및 주권국가들의 권리들에 대한 설명은 청의 속국화정책에 대항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서 중시되었다. 특히 1880년대 조·청관계에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고 미국 등 수교한 국가들에 대해 상주외교사절을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서 조선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일련의 외교적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만국공법』과 이를 통해 파악된 근대 주권국가상은 개화파에게 주요한 전거로서 원용되어졌다.

그러나 『만국공법』의 초기 전래과정에서는 서구의 역사적 배경 하에서 등장한 근대국가와 국제법의 주요한 측면인 ‘주권’이 원칙적으로는 국가간 관계에서 평등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유럽국가간의 관계에 적용되며, 비유럽국가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1880년대 청의 간섭과 거문도 점령사건 등에 직면하여 박영효, 유길준 등 개화파로서는 국제법 서적에 언급된 주권의 적용원리와 국제정치의 현실간의 괴리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개화파로서는 만국공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만국공법의 관련 규정을 원용하여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조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전하는 한편, 조선의 국력을 배양하거나 중립화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주권론을 원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화기 조선에 전래된 『만국공법』은 그 책에 담긴 서구중심적 가치관과 주권(Sovereignty) 개념 형성의 역사적 배경, 국제법의 기본 원리와 구체적 사항들이 충분히 파악되기보다는, 조선이 직면한 외교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개화파에 의해 취사선택된 양상으로 이해되거나 원용되는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高宗時代史』, 『修信使記錄』.

日本 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 第21卷(明治 21年 1月~12月間).

Bourne, Kenneth and D. Cameron Watt, eds.,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reports and papers from the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Part I,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World War. Series E, Asia, 1860~1914, Vol. 2, Korea, the Ryukyu Islands, and North-East Asia, 1875~1888.* Frederick, Md.: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89~1994.

국사편찬위원회 편, 『陰晴史·從政年表 全』. 서울: 탐구당, 1971.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金玉均全集』.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俞吉濬全書編纂委員會, 『俞吉濬全書』. 서울: 일조각, 1971.

유길준 저·김태준 역, 『西遊見聞(前)』. 서울: 박영사, 1979.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萬國公法』.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1.

_____, 『公法會通』.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1.

_____, 『公法便覽 上·下』.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1.

重野安繹 譯, 『萬國公法』. 加藤周一·丸山眞男 『翻譯の思想』. 東京: 岩波書店, 1991, 3~35 쪽

Wheaton, Henry,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The Literal Reproduction of the Edition of 1866 by Richard Henry Dana, Jr., Edited, with Notes By George Grafton Wilson,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36.*

Denny, O. N., *China and Korea.* Shanghai: Kelly and Walsh, Ltd., 1888. 신복룡·최영근 역, 『대니문서』. 서울: 평민사, 1987.

김봉진, 「朝鮮의 萬國公法の受容-下-開港前夜から甲申政變に至るまで」. 『日本 北九州大學外國語學部 紀要』 80, 1994.

김세민, 『한국근대사와 만국공법』. 서울: 경인문화사, 2002.

김수암, 「1880년대 만국공법의 전파와 수용: 조청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년도 연례학술회의 외교사분과 발표논문집』(2002. 12. 12).

김용구, 「서양국제법이론의 조선전래에 관한 소고(1)」. 『태동고전연구』 제10집 1993.

_____, 『세계관충돌의 국제정치학: 동양 禮와 서양 公法』. 서울: 나남출판, 1997.

_____, 「조선에 있어서 만국공법의 수용과 적용」. 『국제문제연구』 No. 23, 1999.

_____, 『외교사란 무엇인가』. 인천: 도서출판 원, 2002.

- 김학준, 『한말의 서양정치학 수용 연구: 유길준·안국선·이승만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김현철, 「개화기 국제질서의 변동과 만국공법(국제법)의 수용」,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년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집』(2004. 12. 10).
- 김홍수, 「개항전 『만국공법』의 수용과 이해」, 공군사관학교 『논문집』 Vol. 49, 2002.
-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저, 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도서출판 이산, 2001.
- 문중섭, 『한말의 서양정치사상 수용』,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8.
- 박상섭, 「근대 주권개념의 발전과정」,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 『세계정치, 기획: 주권과 국제관계』 제25집 1호, 2004.
- 안용준, 「개화기 서구정치학의 도입에 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유재곤, 「일제의 대한침략논리와 만국공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1995.
- 이광린, 「한국에 있어서의 『萬國公法』의 受容과 그 影響」, 『東亞研究』 제1집, 1982.
-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 『세계정치, 기획: 주권과 국제관계』 제25집 1호, 2004.
- 李用熙, 『일반국제정치학(상)』, 서울: 박영사, 1983년 중판.
- 정용화, 「유길준의 ‘양절’ 체제론: 이중적 국제질서에서의 『방국의 권리』」, 『국제정치논총』 37집 3호, 1998.
- _____, 「근대한국의 주권 개념의 수용과 적용」,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 『세계정치, 기획: 주권과 국제관계』 제25집 1호, 2004a.
- _____,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 한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b.
- 최종고, 『全訂新版 韓國法思想史』,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1.
- Anderson, James, “The Modernity of Modern States.” Anderson, James, ed., *The Rise of the Modern State*. London: Wheatsheaf Book Ltd. 1986.
- Brierly, J.L., *The Law of Nation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Law of Peace*.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84.
- Finer, E, Samuel, “State- and Nation-Building in Europe: The Role of the Military.” Charles Tilly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 Gong, Gerrit W.,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1984.
- Hsü, Immanuel C. Y., *China’s Entrance into the Family of Nations: The Diplomatic Phase*

1858-188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Philpott, Daniel, *Revolution in Sovereignty: How Ideas Shaped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투고일 : 2005. 1. 27.

● 심사완료일 : 2005. 2. 21.

● 주제어(keyword) : 마틴의 번역서적 『萬國公法』(Martin's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Law, *Wanguogonfa*), 주권(Sovereignty), 국제법서적(International Law Books), 조선의 자주독립(Independence of Korea as a State), 개화파(Progressive Party), 유길준(Yu Kil-chun).